

정책보고서 2001-05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평가와 제언

2001. 9

본 자료는 한국경제연구원 법경제연구센터 서정환 연구
위원이 집필한 것으로, 본원의 공식견해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문의: Tel 3771-0035 Fax 785-0273

<목 차>

【요 약】	1
I. 기업구조조정 현황	3
1. 워크아웃기업처리 현황과 문제점	4
2. 최근의 부실대기업처리 현황과 문제점	6
3. 부실기업처리 지연의 시사점	7
II.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제정 취지	9
III. ‘촉진법(案)’의 주요 내용과 평가	11
1. 기업부실의 조기포착을 위한 규정	12
2.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법적절차	13
3. 신속한 부실기업처리를 유도하는 규정	16
4. 희생가능기업의 신속한 자금지원을 유도하는 규정	17
5. 기존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소급적용으로 인한 문제점	19
IV.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제언	20

【요 약】

현재 부실기업처리가 지연되는 원인은 복합적이며 어느 한 경제 주체의 문제가 아니다. 법원의 전문성 및 법적절차의 신속성 부족, 채권금융기관의 기업신용평가능력 부족, 정부주도하에 추진된 부실기업처리 방안에 대한 신뢰도 부족, 부실기업처리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 자율적 기업구조조정의 추진을 위한 제도미비 등이 작금의 부실기업처리 지연으로 인한 자원배분 왜곡의 원인이다. 따라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제시한 채권금융기관의 출자 및 투자 제한 완화는 회생가능기업의 자금지원을 촉진함으로써 신속한 회생계획의 이행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작금의 부실기업처리 지연의 원인이 채권금융기관의 무임승차 문제라는 인식하에 채권금융기관의 행태를 규율하면서 형식적으로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법적 기업퇴출절차를 설정하고 있을 뿐 복합적인 처방을 통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이 법의 절차는 금융기관간 협약을 뺀 과거 워크아웃의 법제화에 불과하다.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부실기업처리는 현재 채권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부실기업 퇴출을 유도하지 못하며, 채권금융기관의 행태 규율은 금융기관 자율성을 억압하고 있다. 또한 현재 대부분 채권금융기관이 정부투자금융기관인 상황에서 동 법안의 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채권단의 신규자금지원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채권행사유예를 금융감독원이 요청하게 함으로써 관치금융을 통한 정부주도 구조조정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며, 기존 워크아웃제도에 동 법안을 소급적용함으로써 과거 정부주도 기업구조조정을 합리화시키고 있기도 하다.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제 역할을 하여 현재까지 정부 및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부실기업처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법원의 전문성을 확충하는 파산법원 설립이 시급하다. 더불어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적 미비점 보완, 현재의 정부투자금융기관이 민영화될 때까지 경영자율성 확보, 부실금융기관이 시장원리에 따라 퇴출될 수 있도록 금융시장의 선진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복합적 처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채권금융기관의 행동규정 설정을 통해 부실기업을 처리하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효율적이고 시장원리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에 기여하기 어렵다.

I. 기업구조조정 현황

- 기업구조조정은 다양한 형태의 기업혁신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회생불가능한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양면성을 갖고 있음.
-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은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보다는 급격히 증가한 부실기업처리에 중점을 두어 왔음.
- 부실기업의 처리는 5대재벌의 경우 빅딜을 포함한 재무개선약정, 중견대기업은 워크아웃제도, 여타 기업은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일차적으로 경영정상화를 시도하고, 이후 법적절차(도산3법)를 통해 해결하여 왔음.
 - 워크아웃제도는 한시적(2000년 말까지) 제도였기 때문에 최근의 부실대기업의 처리는 채권금융기관과 채무기업간의 협의와 법적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기업퇴출관련 법적절차의 개선을 위한 도산3법 통합작업이 진행중인 한편, 워크아웃기업과 최근의 부실대기업(현대건설, 하이닉스반도체(구 현대전자), 현대투신, 대우자동차 등) 처리의 지연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회는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입법하였음.

1. 워크아웃기업처리 현황과 문제점

- 워크아웃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부실기업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기존의 법적 기업회생제도가 갖는 전문성 부족, 회생방안의 다양성 부족, 절차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간 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사적 기업회생제도임.
- 동 제도는 한시적 제도(1998년~2000년)로서 짧은 기간에 많은 수의 부실기업을 처리하였으나 정부의 정책도구로 활용되었다는 비판이 상존해 왔음.
- 1998년 6월 워크아웃제도가 시행된 이래 104개의 대상기업 중 68개사가 조기종료, 합병 등으로 제외되어 2000년 8월 현재 잔여기업은 46개사임.
- 워크아웃계획은 채무조정과 자구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음. 채무조정의 경우 채무상환, 신규여신 등은 70% 이상이 추진되었으나 출자전환의 실적은 21.6%로서 미진한 상황임. 자구계획의 경우 자산매각, 외자유치, 유상증자 등은 100% 이상이 추진되었으나 계열사 정리는 14.2%로 실적이 미진함.

<표 1> 워크아웃기업 채무조정계획 및 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채 무 조 정 [#]					신규여신 ^{##}
		채무상환유예		출자전환 ^{**}	기 타 ^{***}	계	
		이자감면 [*]	정상금리				
非大宇 (56개사)	계 획	189,277	47,950	72,401	10,347	319,975	10,982
	실 적 (이행율)	171,696 (90.7)	34,627 (72.2)	28,572 (39.5)	37,591 (363.3)	272,486 (85.2)	11,313 (103.0)
大 宇 (12개사)	계 획	533,641	11,888	85,849	34,389	665,767	56,110
	실 적 (이행율)	530,744 (99.5)	11,888 (100.0)	5,666 (6.6)	35,257 (102.5)	583,555 (87.7)	37,209 (66.3)
계 (68개사)	계 획	722,918	59,838	158,250	44,736	985,742	67,092
	실 적 (이행율)	702,440 (97.2)	46,515 (77.7)	34,238 (21.6)	72,848 (162.8)	856,041 (86.8)	48,522 (72.3)

*: 금리우대 포함 **: 대출금출자전환 및 전환사채 인수

***: 예대상계, 상환, 정상거래 등

#: 채무재조정업체는 채무재조정계획상의 계획 및 실적 기준

##: 이행성 지급보증 포함

자료: 금융감독원, 2000. 8.

<표 2> 워크아웃기업 자구계획 및 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자 산 매 각		외 자 유 치	계열사 정 리	유 상 증 자	기 타 [*]	계
		부동산						
非大宇 (56개사)	계 획	27,740	23,002	3,490	7,108	4,085	3,013	45,437
	실 적 (이행율)	33,032 (119.1)	28,621 (124.4)	5,700 (163.3)	1,010 (14.2)	5,616 (137.5)	4,969 (164.9)	50,327 (110.8)
大 宇 (12개사)	계 획	2,204	1,223	-	5,383	-	1,271	8,858
	실 적	2,049 (93.0)	1,294 (105.8)	- (-)	754 (14.0)	- (-)	1,271 (100.0)	4,074 (46.0)
계 (68개사)	계 획	29,944	24,225	3,490	12,491	4,085	4,284	54,295
	실 적 (이행율)	35,081 (117.2)	29,915 (123.5)	5,700 (163.3)	1,764 (14.1)	5,616 (137.5)	6,239 (145.6)	54,401 (100.2)

*: 경영개선, 대주주 사채출연 등

***: 채무재조정업체는 채무재조정계획상의 계획 및 실적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2000. 8.

2. 최근의 부실대기업처리 현황과 문제점

- 처리 현황

- 대우자동차는 워크아웃계획 확정(1999. 11. 25) 이후 매각실패, 노사문제 등으로 인해 법정관리로 전환되었으며(2000. 11. 29) 현재 다임러크라이슬러와 매각협상이 진행중임.
- 현대건설은 1차 자구안 발표(2000. 5. 30) 이후 4차례의 추가 자구안을 거쳐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전환 방침이 확정되었으며(2001. 3. 27), 현재 출자전환, 유상증자, CB발행이 마무리된 상태임.
- 하이닉스반도체는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전자의 매각을 제안하고(2000. 8. 10) 현대그룹이 현대전자 매각을 발표한(2000. 11. 21) 이후 현재 매각을 위한 계열분리가 진행중임.
- 현대투신은 경영정상화 방안 발표(2000. 4. 27), 금감원과 경영정상화 양해각서를 체결한(2000. 6. 18) 이후 현재 미국 AIG그룹과 매각협상이 진행중임.

- 문제점

- 부실대기업의 처리방안이 결정되는데는 3개월~4개월 정도가 소요된 반면 계획대로 이행하는데 시간이 지체되고 있음.
 - 현대건설의 경우 5차례에 걸친 자구안 수정이 이루어진 이유는 자구안평가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기인하고 있음.
 - 예를 들어 2차 및 3차 자구안(2000. 7. 10, 8. 12)에 대해 주채권은행은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금감원은 워크아웃

도 가능하다고 선언한 반면, 재경부는 출자전환 및 워크아웃 불가를 선언

- 재경부는 현대건설의 처리를 계열분리 및 오너의 사재출연과 연관시키는 주장을 관철

<표 3> 부실대기업의 처리방안 결정 소요기간

기업	처리방안 결정까지 소요기간
대우자동차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계획이 확정되는데 3개월
현대건설	1차 자구안에서 출자전환 결정까지 10개월
현대전자	현대건설 채권단의 현대전자 매각제언에서 매각결정까지 3개월
현대투신	경영정상화 방안 발표에서 매각결정까지 4개월

- 채권금융기관들은 부실기업처리 방안에 따라 채무조정 및 신규 자금지원을 해 왔음. 반면 매각전략의 미비(대우자동차), 정부의 정책혼선과 채권금융기관내 출자전환에 관한 갈등(현대건설), 선 계열분리 추진(하이닉스반도체), 매각협상의 지연(현대투신) 등의 이유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

3. 부실기업처리 지연의 시사점

- 법적 기업퇴출제도의 문제: 전문성 부족
 - 법정관리, 화의, 파산 등 법원 주도하의 기업퇴출절차는 법원의 전문성 및 절차의 신속성 부족으로 인해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법원이 해야할 역할을 채권금융기관과 정부가 대신 하여 기업구조조정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음.

－ 채권금융기관의 문제: 출자전환의 지연(워크아웃, 현대건설)

- 출자전환의 지연은 채권금융기관간 무임승차 동기, 금융기관 출자 및 투자에 대한 법적 제한 등을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음.
- 그러나 워크아웃제도와 현대건설의 처리에 있어 정부의 개입과 정책혼선이 깊이 간여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채권금융기관들의 이들 부실기업처리 계획에 대한 불신이 부실기업처리 지연의 또 다른 원인이기도 함. 특히 출자전환된 자금은 해당 기업이 법적절차로 전환될 경우 변제에 있어 최종순위가 되기 때문에 계획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 처리계획에 대한 불신은 정부의 개입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해당 채권금융기관들이 IMF 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정부투자 금융기관화된 부실은행들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의 기업신용평가 능력의 한계에도 기인하고 있음.

－ 부실기업 측면의 문제: 자구계획 이행실적의 부진

- 워크아웃기업주의 자발적 이행동기 부족과 계열사 정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 부족이 지연의 원인이라 할 수 있음.

－ 매각의 경우 매각전략의 미비(대우자동차), 계열분리를 선행조건으로 하는 매각협상 자체의 지연(현대투신, 하이닉스반도체) 등이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매각전략의 미비는 정부와 채권단의 경험부족이 원인이라 할 수 있으며, 매각의 선행조건으로 제시되는 계열분리는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상의 문제가 원인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부실기업처리 지연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법원의 전문성 확충, 금융기관의 자율성 확보 및 기업신용평가 능력 제고, 금융시장의 선진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등에 있으며 단기 해결방안으로는 출자전환의 활성화, 계열사 정리를 위한 제도 개선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II.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제정 취지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촉진법)'은 한시법(2005년 12월까지)으로 입안되었으며(2001. 6. 15)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 통과하고(2001. 6. 26, 7. 19)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음(2001. 7. 19). 동 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과 목적으로 입안되었음.
- 문제의식
 - 합리적 이해조정을 추진하는 시장관행 부족으로 자율적 합의가 어려움.
 - 무임승차를 통한 채권금융기관의 이기주의
 - 기업부실의 조기인지 및 부실기업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사전·사후관리체제 미흡

－ 목적

- 상시적 구조조정시스템 정착을 위한 채권금융기관간 시장규칙을 명확히 정립
-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관리체제 강화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
- 법원이 중심이 되는 기존의 구조조정법률과 상충되지 않도록 함.

－ 수정과정

- 동 법의 초안에는 주채권금융기관에 의한 여타 금융기관의 채권행사 유예, 절차내 신규자금에 대한 여타 법적 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 부여가 포함되어 재산권 침해, 기존 법적 기업퇴출제도의 유효성 반감 등의 비판이 있었음.
- 동 조항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동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채권행사유예는 금감원의 요청에 의해 가능하게 하고, 우선변제권 부여는 기존 법적퇴출제도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완화되었음.

Ⅲ. '촉진법(案)'의 주요 내용과 평가

<표 4> '촉진법'의 주요 내용 및 평가

법조항의 목적	법안의 내용	평 가
기업 부실의 조기 포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회계관리제도 · 감사인의 내부회계 관리 제도 검토 및 보고 · 금융기관의 정기적인 채무기업신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實益이 없음(내부회계관리제도, 채무기업 신용평가) · 금융기관의 자율성 억제(채무기업평가를 금감위의 기준에 따르게 함)
채권 금융 기관 합의 신속한 합의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자협의회 결성 및 주요 운용규정 · 금감원의 채권행사유예 · 소액채권자 배제 · 채권매수청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부실금융기관 중심의 채권자협의회는 부실기업의 과감한 퇴출을 추진하기 어려움. · 재산권 침해(소액채권자 배제, 채권매수청구권) · 정부의 정책적 개입 가능성(금감원의 채권행사유예 요청) · 경영권 침해(채권자협의회 채무기업 관리인 선임)
신속한 부실기업퇴출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행사유예기간내 처리방안 결정 · 채권매수청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實益이 없음(2~4개월내 처리방안 결정, 주채권은행이 절차 주도) · 절차지연(채권매수청구권)
회생 가능 기업의 신속한 자금 지원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의 출자 및 투자제한 완화 · 기업구조조정 회사에 대한 특례 · 부실기업의 액면미달 주식발행 요건 완화 · 신규지원자금에 우선변제권 부여 · 계획미이행 채권금융기관에 손해배상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금융기관의 신속한 계획이행에 기여 · 신규자금지원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는 회생가능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유효하나 정부개입에 의한 구조조정의 가능성이 상존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워크아웃기업에 소급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에 부담 추가 · 과거 정부주도 기업구조조정의 합리화

－ 전반적 내용

- ‘촉진법’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기업부실의 조기인지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법적 기업구조조정 절차
 -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출자 및 투자에 대한 법률상의 제약요인 제거
- 그러나 동법은 實益이 없으며, 금융기관 자율성 억압, 자율적 구조조정 지원 미흡 등으로 인해 원활한 부실기업처리에 기여하기 어려움.

1. 기업부실의 조기포착을 위한 규정

－ 관련 규정

-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4조)
-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및 보고(5조)
- 금융기관의 정기적인 채무기업신용평가(9조)

－ 實益이 없으며 금융기관 자율성을 침해

－ 實益이 없음.

- 이미 대부분의 기업은 내부회계 관련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사 및 감사가 관리를 하고 있음. 또한 기업회계의

신뢰도는 회계제도의 개선, 공시확대 등을 통해 충분히 제고될 수 있어 이를 위해 기업내부회계규정의 설정을 의무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음.

- 현재에도 금융감독원의 감독하에 채권금융기관은 정기적으로 채무기업신용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 금융기관의 자율성 억제

- 금융기관의 채무기업신용평가를 금감위의 기준에 따르게 함으로써 개별금융기관의 자율성이 손상될 수 있음. 또한 금감위가 제시한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상존
-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금융기관별로 다양한 위험에 대한 태도와 경영방침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률적인 기준의 적용은 바람직하지 못함.

2.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법적절차

－ 관련 규정

- 주채권은행 판단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처리(10조, 12조)
- 금감원의 채권행사유예 요청(14조)
- 소액채권자 배제(25조)
- 채권매수청구권(29조)
- 채권자협의회 결성(24조), 조정위원회(31조)

- 채권금융기관들의 신속한 합의를 유도할 개연성은 있으나 법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며 현재의 상황에서는 부실기업의 퇴출을 유도하기는 어렵고 재산권 및 경영권 침해의 소지를 갖고 있음.

- 實益이 없음.

○ 주채권은행이 주도하는 채권자협의회의 결성 및 운용은 신속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개연성이 있음.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채권은행은 IMF외환위기 이후 부실화되어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이며 이들에게 있어 채무기업의 부실이 곧 채권은행의 부실로 연결되기 때문에 부실기업의 과감한 퇴출을 추진하기 어려움.

○ 현재의 부실은행들이 정상화되어도 동 법의 절차는 채무변제 위주의 기업구조조정을 유도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의 본질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채권자협의회의 결성과 운용은 기존에도(워크아웃제도, 현행 채권은행상설협의회 등)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고려할 때 반드시 법이 필요한 사안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음.

- 재산권침해의 가능성

○ 협의회 결성이나 결의에 반대하는 금융기관은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이외의 방법이 없음. 이는 재산권 행사 침해

○ 시가평가에 의한 채권매수는 이론적으로는 타당하나 현실적으로 채권시장의 낙후성, 금융기관간 이견, 판치금융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 및 절차지연 유발의 가능성이 있음.

－ 정부의 정책적 개입

- 채권행사유예는 채무기업의 가치를 유지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구조조정계획 설정에 도움이 될 것임.
- 그러나 채권금융기관이 정부투자금융기관인 상황에서 채권행사유예가 금감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채무기업의 처리방향에 정부의 영향력이 행사할 가능성이 상존

－ 경영권 침해의 가능성

- 공동관리하에서 협의회가 채무기업 경영관리인을 선임하고 채무기업이 관리인의 승인없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 채권행사유예나 공동관리를 중단할 수 있음.
- 경영권 이전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성립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강제할 사안은 아님.
 - 법이 필요한가: 기존 워크아웃제도하에서 채권단이 경영권을 장악한 사례가 있음.
 - 워크아웃의 경우 채권단이 경영관리단 파견을 통해 사업시행 및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집행에 간여하였으며, 채무재조정 18개사 중 기업주가 경영일선에서 퇴진한 기업이 8개사가 있음(동아건설, 동국무역, 맥슨전자, 진도, 세풍, 충남방직, 신우, 아이스비전).
- 도산기업 경영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채권금융기관의 경영권 장악은 기업구조조정에 기여하지 못함. 특히 몇몇 워크아웃 기업에 전문성이 부족한 채권은행의 퇴직간부들을 파견하여 기

업회생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현 상황의 문제점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3. 신속한 부실기업처리를 유도하는 규정

- 관련 규정

- 채권행사유예 기간 내(2개월~4개월)에 처리방안 결정(12조2항 및 3항, 14조2항)
- 채권매수청구권(29조)

- 實益이 없으며 절차지연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 實益이 없음.

- 부실기업처리의 현실적인 문제는 처리방안 결정이 아니라 결정된 방안의 이행에 있음.
 - 과거 워크아웃 기업의 협의회 소집 - 계획확정까지 평균기간은 2~4개월로 법안의 규정과 동일함.
 - 최근 부실대기업처리 방안 결정도 3개월~4개월 내에 이루어졌음.

<표 5> 워크아웃기업의 처리방안 결정 기간

	1월 이하	1월-2월 이하	2월-3월 이하	3월-4월 이하	4월-5월 이하	중단	졸업	기타*	계
기업수	1	3	39	43	3	9	1	4	103

* 기타에는 조정신청, 다른 기업과 합병된 경우를 말함.
 자료: 기업개선작업 진행상황, 1999. 11. 26, 기업구조조정위원회

- 기존 법적절차로의 이행은 주채권은행이 아니더라도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음(법정관리의 경우 회사자본금의 1/10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 또한 채무기업이 법적절차를 신청하면 ‘촉진법’의 절차는 그 효력을 잃게 됨. 따라서 법적절차로의 이행을 주채권금융기관이 하도록 한 규정은 실효성이 없음.

－ 비효율성 유발

- 채권의 시가평가에 의한 채권매수는 채권시장의 낙후성과 금융기관간 이견으로 절차지연의 요인이 될 것임.
- 채권시가평가는 협의회 결정이 안되면 조정위원회로, 조정위원회 결정이 안되면 결국 법원에서 결정하게 됨. 청구된 채권매수가 지연되면 채무재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절차지연의 원인이 됨.

4. 회생가능기업의 신속한 자금지원을 유도하는 규정

－ 관련 규정

- 금융기관의 출자 및 투자 제한 완화(34조)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35조)
 - 부실기업 출자전환의 경우 액면미달 주식발행 요건 완화(34조)
 - 신규자금지원에 우선변제권 부여((18조)
 - 손해배상책임(30조)
- － 금융기관의 출자 및 투자여력 확충은 채권금융기관의 신속한 회생가능기업 지원과 채무조정에 기여할 것임. 그러나 신규자금지원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는 사적자치 및 사적책임 원칙 위배, 정부주도 기업구조조정의 지속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 － 채권금융기관의 신속한 계획이행에 기여
- 금융기관의 출자 및 투자제한 완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그리고 액면미달 주식발행 요건의 완화는 회생가능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자금여력을 확충시키고 원활한 채무조정을 촉진시킴으로써 신속한 기업회생에 도움이 될 것임.
 -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전환, 자금지원 등 결정된 방안의 신속한 이행에 도움이 될 것임.
- － 사적자치 및 사적책임 원칙 위배
- 동 법안의 절차 내에서 지원된 자금을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는 법원주도의 기업퇴출절차보다는 그 이전에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려는 동기를 제공할 개연성이 존재함.

- 그러나 우선변제권 부여는 채무기업과 채권자간의 협의사항이지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사적자치와 사적책임의 원칙을 위배
- 정부주도 기업구조조정의 지속
 - 신규자금지원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는 관치금융을 통해 정부개입에 의한 구조조정을 더욱 손쉽게 만드는 조항임.
 - 채무기업에 대한 추가지원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부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채무기업에 대한 추가지원을 손쉽게 압박할 수 있음.
 - 특히 현재와 같이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정부투자기관인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함.

5. 기존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소급적용으로 인한 문제점

- 금융기관에 부담 추가
 - 과거 협의회 결정에 반대하는 금융기관들은 표결에 의해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협의회결정을 따르고 있음. 이들에게 위약시 손해배상책임이 추가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거나 회생불가능 판단기업에 대해 자금지원을 해야하는 사건 발생
- 정부주도 기업구조조정의 합리화

- 워크아웃이 정부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었다면 이 제도에 '촉진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과거 정부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을 사후적으로 합법화하는 결과를 낳게 됨.

IV.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제언

- '촉진법'은 금융기관의 출자 및 투자여력을 확충시킴으로써 회생 가능기업의 신속한 회생을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부실금융기관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절차는 기업구조조정의 본질을 왜곡시킬 것임. 또한 채권금융기관의 행태에 관한 규정은 실효성이 없고 여타권리와 상충되며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억제하여 원활한 부실기업처리에 기여하기 어려움. 더불어 채무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담고 있지 않음.
-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해서는 복합적인 처방이 필요함.
- 파산법원의 설립을 통한 법원의 전문성 확충,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지원, 정부투자금융기관의 자율성 확보, 금융시장의 선진화가 이루어진다면 부실기업처리의 지연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감소될 것임.
- 파산법원의 설립

- 기업구조조정은 기업회생과 퇴출에 대한 판단 및 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법원의 경제적 판단능력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은 역할을 객관적 입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법원임.
- 우리 기업의 퇴출률이 높고(1991년~1995년의 경우 12.46%) 적 채된 기업도산관련 사건의 처리와(2001년 4월 현재 은행이 채권금융기관인 법정관리 업체 149개, 화의업체 330개: 금감원 자료)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도산기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우리 법원의 전문성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법원의 전문성은 판사 개인의 능력뿐 아니라 전문보조인력의 확충에 의해 제고될 것임.

<표 6> 법원의 도산관련 사건 처리건수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합계
파 산	30	-	15	17	15	26	10	-	286	339
회사정리	42	66	106	77	82	104	85	119	83	764
화 의	-	-	-	-	-	8	12	-	774	794
합 계	72	66	121	94	97	138	107	119	1,143	1,957

자료: 법원연감

-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파산법원(California Central Bankruptcy Court)의 경우 인구 1700만명의 지역을 대상으로 20여명의 판사와 360여명의 전문보조인력이 도산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음. 판사 1인이 사건에 소비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5.9시간으로서 이는 미국 전체 평균 5시간보다 17%정도 높은 수준임(1999년).

- 현재 서울지방법원 파산부는 6명의 판사와 6명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가 도산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음. 파산부 판사들이 매일 저녁 10시가 넘어서 퇴근하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파산법원의 설립을 통한 법원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임.
-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촉진
 - 단기적으로 워크아웃의 경우 계열사 정리, 그룹의 경우 계열분리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분할의 활성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과 연계될 수 있을 것임.
 - 정부투자금융기관의 조속한 경영자율성 확보
 -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정부투자금융기관의 민영화는 쉽지 않음. 실제로 정부는 공적자금투입은행의 민영화를 2002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IMF와 약속한 바 있음.
 - 그렇다면 민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한시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함.
 - 부실금융기관의 시장원리에 의한 퇴출
 - 현재 대부분의 채권은행은 IMF 이후 부실화되어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이며 이들에게 있어 채무기업의 부실이 곧 채권

은행의 부실로 연결되기 때문에 부실기업의 과감한 퇴출을 추진하기 어려움.

- 향후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실금융기관의 시장 원리에 의한 퇴출을 통해 금융기관들이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관치금융의 금지를 포함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